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심사보고

1. 심사경과

가. 제안일자 및 제안자 : 2003년 1월 13일 부천시장 제출

나. 회부일자 : 2003년 1월 13일

다. 상정 및 의결일자

-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1월18일) 상정
- 제102회 부천시의회(임시회) 제3차 행정복지위원회(2003년1월18일) 의결

2. 제안설명 요지

(제안설명자 : 원미구보건소장 임문빈)

□ 개정이유

-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95. 12. 29) 동법 시행령이 개정('96. 7. 13) 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와 목적, 기능 등의 유사함으로 별도의 조례 제정없이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하여 동 위원회의 적절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조례 제명을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로 함.
- 목적을 조례에 부합되도록 조정함(안 제1조)
-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을 신설함(안 제2조)
- 위원장 및 위원수와 위원 위촉대상을 지역보건법에 맞게 조정함(안 제3조)

3. 질의 및 답변요지

질의 내용	답변 내용
○ 위원회 구성인원을 당초 30인에서 20인으로 조정한 사유는	○ 상위법인 지역보건법시행령에 근거하여 20인으로 조정하게 되었음

4. 토론요지

가. 찬성토론

○ 없음

나. 반대토론

○ 없음

5. 심사결과

○ 원안의결

6. 소수의견 요지

○ 없음

7. 기타 필요한 사항

○ 없음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의안 번호	제 83 호
의결 년월일	2003. 1. 21 (제102회)

제출년월일 : 2003. 1. 13.

제 출 자 : 부 천 시 장

□ 개정이유

- 보건소법이 지역보건법으로 개정('95.12.29) 동법 시행령이 개정('96.7.13) 됨에 따라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거 운영되고 있는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와 목적, 기능 등이 유사함으로 별도의 조례 제정없이 부천시 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에 지역보건의료계획심의위원회에 관한 사항을 명문화 하여 동 위원회의 적정한 운영을 위하여 개정하고자 함.

□ 주요골자

- 가. 조례 제명을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로 함.
- 나. 목적을 조례에 부합되도록 조정함.(안 제1조)
- 다.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 기능을 신설함.(안 제2조)
- 라. 위원장 및 위원수와 위원 위촉대상을 지역보건법에 맞게 조정함.(안 제3조)

부천시조례 제 호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조례 제명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를 “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로 한다.

제1조를 다음과 같이 한다.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

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
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의 평가에 관한 사항
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3조제1항중 “협의회는 회장”을 “위원회는 위원장”으로하고, “부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30인이내의”를 “20인이내의”로 하고 제2항 및 제3항을 각각 다음과 같이 하며, 제4항중 “협의회의”를 “위원회의”로 한다.

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회장

은 원미구보건소장으로 한다.

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 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제4조제목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며, 제1항중 “회장은 협의회”를 “위원장은 위원회”로 하고, “통할”를 “총괄”로 하며 “단, 회장”을 “다만 위원장”으로 하며 “부회장이”를 “부위원장이”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또는 회장”을 “시장 또는 위원장”으로 하며 동조 제4항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한다.

제7조제1항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하고, 동조 제2항중 “회장”을 “위원장”으로 하며 제8조 내지 제10조중 “협의회”를 “위원회”로 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조례 시행당시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건강생활 실천협의회 구성은 이 조례에 의하여 구성된 것으로 본다. 다만, 위원장, 부위원장, 구성원의 수는 종전의 규정에 의하여 위촉된 임기 만료시까지로 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운영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민에게 건강에 대한 가치와 바른지식을 보급하고 스스로 건강생활을 실천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시민의 건강증진을 위하여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이하 "협의회"라 한다)를 구성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협의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협의 조정한다.</p> <p>1. ~ 4. (생략)</p> <p>< 신설 ></p>	<p style="text-align: center;"><u>부천시건강생활실천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조례</u></p> <p>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민건강증진법 제10조 및 지역보건법시행령 제2조의 규정에 의하여 부천시건강생활실천협의회 및 지역보건의료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설치·운영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p> <p>제2조(기능) ①위원회는.....</p> <p>1. ~ 4. (현행과 같음)</p> <p>②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사항에 관하여 시장의 자문에 응한다.</p> <p>1. 지역내 보건의료의 실태조사에 관한 사항</p> <p>2.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p> <p>3. 지역보건의료계획의 시행 및 시행결과에 평가에 관한 사항</p> <p>4. 기타 시장이 지역보건의료시책의 추진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p>

현행	개정안
<p>제3조(구성) ①협의회는 회장 1인과 부회장 1인을 포함한 30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p> <p>②협의회는 회장(이하 "회장"이라 한다)은 시장으로 하고 부회장은 부시장으로 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민간인, 학계 및 관계유관기관단체의 자중에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전문가 2. 시의회 의원 및 관련 공무원 <p>④협의회는 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분야별로 분과위원회를 둘 수 있다.</p> <p>⑤(생략)</p>	<p>제3조(구성) ①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20인이내의</p> <p>②위원회의 위원장(이하 "위원장"이라 한다)은 부시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원미구보건소장으로 한다.</p> <p>③위원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시장이 위촉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역주민 2. 보건의료관련기관 · 단체의 임직원 3. 보건의료관련전문가 4. 시의회 의원 및 관계공무원 <p>④위원회.....</p> <p>⑤(현행과 같음)</p>
<p>제4조(협의회 회의등) ①회장은 협의회를 대표하고 회무를 통할한다. 단, 회장 부재시에는 부회장이 대리한다.</p> <p>②협의회는 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거나 또는 회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이를 소집한다.</p> <p>③(생략)</p> <p>④회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동수인 때에는 결정권을 갖는다.</p>	<p>제4조(위원회.....)①위원장은 위원회.....총괄.....다만, 위원장 부위원장</p> <p>②위원회.....시장 또는 위원장.....</p> <p>③(현행과 같음)</p> <p>④위원장.....</p>

현 행	개 정 안
<p>제7조(간사 및 서기) ①<u>협의회</u>의 사무에 관한 사항을 처리하기 위하여 간사 및 서기를 두되 간사는 원미구보건소 주무담당주사가, 서기는 원미구보건소 업무소관 소속직원으로 한다.</p> <p>②간사 및 서기는 <u>회장</u>의 영을 받아 사무를 처리한다.</p> <p>③(생략)</p>	<p>제7조(간사 및 서기) ①<u>위원회</u>.....</p> <p>.....</p> <p>.....</p> <p>.....</p> <p>.....</p> <p>.....</p> <p>.....</p> <p>②.....<u>위원장</u>.....</p> <p>.....</p> <p>③(현행과 같음)</p>
<p>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 시장은 <u>협의</u> 회가 협의 조정된 사항에 대하여 이를 행정시책등에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p>	<p>제8조(협의조정사항의 처리).....<u>위원회</u>.....</p> <p>.....</p> <p>.....</p>
<p>제9조(실천운동등의 전개) <u>협의회</u>는 제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실천운동등을 전개할 수 있다.</p>	<p>제9조(실천운동등의 전개) <u>위원회</u>.....</p> <p>.....</p> <p>.....</p>
<p>제10조(수당등) <u>협의회</u> 및 분과위원회에 참석한 시 소속공무원이 아닌 위원에 대하여는 부천시위원회실비변상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수당등을 지급할 수 있다.</p>	<p>제10조(수당등) <u>위원회</u></p> <p>.....</p> <p>.....</p> <p>.....</p> <p>.....</p> <p>.....</p>